

수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608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후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0. 28.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12. 선고 2019가소638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255,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8. 4. 5.부터 2018. 6. 8.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원고의 주류를 거래처에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출고받아 거래처에 공급한 주류대금 중 14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15,974,810원 및 2018. 6. 8. 출고한 주류대금 상당액 6,280,800원, 합계 22,255,61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류대금’이라 한다)¹⁾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류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류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반환 요구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주류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은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주류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C의 운영자였던 D에게 고용된 것이다. 그런데 C 면허가 취소되면서 C가 2014. 9. 1. 원고와 지입관계를 맺은 이래 피고는 형식적으로 여러 주류 회사 및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업무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D의 지시를 받아 영업을 하여 오다가 D의 지시로 2018. 6. 1.부터 E 주식회사(2018. 8. 2.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 이하 ‘F’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2018. 6. 8. 원고의 주류를 출고하여 거래처에 공급해준 사실은 있으나, 원고와 D 사이의 지입관계에 따라 거래처가 직접 원고가 아닌 F에 주류대금을 준 것이고,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주류대금 역시 F에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반출한 주류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거나 횡령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8. 4. 5. 원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2018. 5. 31. 그 자격을 상실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된 기간 동안 주류를 반출하여 이를 거래처에 공급해왔고, 2018. 6. 8. 원고의 주류를 반출하여

거래처에 공급한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7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다가 갑 제9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실제 C합명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1. 원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건강보험자격을 취득, 2015. 8. 1. 그 자격을 상실한 이후 (합)G, H합명회사 등을 사업장으로 하는 건강보험자격을 득실하다가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된 기간인 2018. 4. 5.부터 2018. 5. 31.까지 원고를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8. 6. 1. F를 사업장으로 하는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원고는 ‘피고가 2018. 6. 8.경 원고 소유의 차량 한 대 및 시가 6,280,800원 상당의 주류를 가지고 간 후 원고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법검찰청은 2019. 7. 19. “피고가 원고의 주류를 출고한 뒤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F로 끌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F의 전무로 있는 I이 원고 대표이사 J의 처인 K과 영업사원 영업일보에 정산을 마쳤다고 진술한 점, 이에 대하여 K 역시 본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처리가 계속 미루어지고 현재까지 처리가 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F와 원고 사이에 상호 정산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가 위 주류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한 점, 원고는 L에 대하여 반출한 원고의 주류를 거래처에 공급하고 그 주류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법검찰청은 2019. 4. 29. “이 사건의 거래처는 L가 원고의 소속이 되기 전부터 거래를 하고 있었던 곳이고, 위 거래처는 원고와 D의 처인 I의 관계를 모르고 있고, L를 통하여 F의 단말기로 주류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I와 원고와의 정산 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F의 운영자인 M의 지시로 거래처 대금을 F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L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L에 대하여도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출하여 거래처에 공급한 주류대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 피고가 보관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위법하게 그 주류대금 상당액을 보관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규, 판사 이승일, 판사 문유진

1) 원고는 2019. 9.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11개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 9,833,620원, 2018. 7. 31.까지 임의로 출고한 원고의 주류 물품 상당액 8,840,200원 합계 18,773,820원”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금액은 변경하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원고의 위 주장 모두에 대하여 판단한다.